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의정활동 관련 경비 기준액 초과 지출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내 용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 5개의 상임위원회¹³⁾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으로 구성하여 의회비 예산¹⁴⁾과 집행부 예산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준경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4조제1호에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표 1] 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3)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14) 의회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으로 편성된 9가지 경비(통계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

[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준액(2016회계년도)

구 분	시·도	시·군·구	비 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연간)	의원 1인당 6,100	의원 1인당 4,800	
의회운영업무추진 비(천원/월)	의장 4,200, 부의장(1인당) 2,100, 상 임위원장(1인당) 1,300 ※ ○○·○○는 다른 기준 적용	시·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도 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	
지방의회의원국외 여비(연간)	의원 정수×2,000천원(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출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행정자치부훈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Ⅲ장 세출예산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6. 의회비(205목)에 따르면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3조제2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15)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

15)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의원·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어 있다.

따라서 창원시의회 ○○○○국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¹⁶⁾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¹⁷⁾로 지출하여야 하고 집행부 예산에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창원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창원시의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표 2] ‘창원시의회 관련 경비 기준액 및 집행 현황’과 같이 1,541,800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476,278천 원을 집행하고 65,522천 원을 불용하였다.

[표 2] 창원시의회 관련 경비 기준액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집행액	집행잔액	기준액	집행액	집행잔액	기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1,541,800	1,476,278	65,522	961,000	902,094	58,906	580,800	574,184	6,616
2012년	425,600	400,220	25,380	275,000	252,268	22,732	150,600	147,952	2,648
2013년	375,000	373,225	1,775	224,400	224,221	179	150,600	149,004	1,596
2014년	389,600	364,205	25,395	246,200	222,642	23,558	143,400	141,563	1,837
2015년	351,600	338,628	12,972	215,400	202,963	12,437	136,200	135,665	535

※ 출처: 창원시 감사제출 자료

또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의회사무국의 집행예산 중에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로 재분류한 결과, [표 3]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집행부 집행 현황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를 집행부 예산인 사무관리비로 147건 149,792천 원과 행사운영비로 12건 9,891천원 등 총 159건 159,683천원을 지출¹⁸⁾하였다.

16) 의원 1인당 연간 4,800천원

17) 창원시의 경우 의장 3,300, 부의장 1,650, 상임위원장 1,200(단위: 천원/월)

18)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집행부 집행 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분류토록 하여 제출 받음

[표 3] 의회활동 관련 경비의 집행부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비 고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계	179	172,884	167	162,993	12	9,891	
2012년	59	51,000	50	42,972	9	8,028	
2013년	45	37,199	44	36,726	1	473	
2014년	34	47,713	33	47,373	1	340	
2015년	21	23,771	20	22,721	1	1,050	

※ 출처: 창원시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따라서 지방재정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 실질적인 집행액은 의회비 예산에서 집행한 1,476,278천원과 집행부 예산에서 집행한 159,683천원을 합산한 총 1,541,800천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창원시의회는 [표 4] ‘2012년~2015년까지 의회 관련 경비 집행 현황’과 같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1,541,800천원임에도 1,635,961천원을 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행정자치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기준액을 초과(94,161천원)하여 집행하였다.

[표 4] 2012~2015년도 의회 관련 경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의회 관련 경비 기준액(a)	의회 관련 경비 집행액(b)			차 액 (b-a)	비 고
		계	의회비 예산	집행부 예산		
계	1,541,800	1,635,961	1,476,278	159,683	-94,161	
2012년	425,600	451,220	400,220	51,000	-25,620	
2013년	375,000	410,424	373,225	37,199	-35,424	
2014년	389,600	411,918	364,205	47,713	-22,318	
2015년	351,600	362,399	338,628	23,771	-10,799	

※ 의회관련경비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한정

※ 출처 : 창원시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 정해진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